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19가합581875, 2020가합563743(병합) 판결

[사해행위취소 ·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상준

2.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승규

변론 종결 2020. 10. 16.

판결 선고 2021. 2. 5.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가.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240,082,627원 및 그중 237,856,193원에 대하여 2019.10. 28.부터 2020. 1. 4.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게 198,184,730원 및 그중 196,246,960원에 대하여 2019. 10.

30.부터 2019. 11. 27.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A, B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취지 : 피고 C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55,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는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취지 : 피고 C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7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는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 신용보증기금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원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같은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주채무 이행기간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신용보증기금에게,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금액과 위 대위변제일 이후의 약정 지연손해금,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로 계산한 위약금, 기타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래 1. 나의 2)항 기재 대위변제일인 2019. 10. 28.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연 8%이다.

순번	보증일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대출기관	대출금액(원)
1	2016. 10. 28.	170,000,000	2017. 10. 27.	기업은행	200,000,000
	(변경약정)	144,500,000	2019. 10. 25.		
2	2016. 10. 28.	127,500,000	2021. 10. 27.	기업은행	150,000,000

2) 피고 회사는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같은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주채무 이행기간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 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게,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대위변제한 금액과 위 대위변제일 이후의 약정 지연손해금,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로 계산한 추가보증료, 기타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래 1. 나의 3)항 기재 대위변제일인 2019. 10. 30.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연 10%이다.

순번	보증일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대출기관	대출금액(원)
1	2017. 9. 20.	195,000,000	2018. 9. 20.	기업은행	195,000,000
	(변경약정)	195,500,000	2019. 9. 19.		

3) 피고 회사의 이사인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각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들의 대위변제

- 1) 피고 회사는 2019. 9. 16. 당좌거래정지로 인해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 2)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2019. 10. 28. 기업은행에 합계 237,856,19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위 대위변제에 따른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지출한 비용(대지급금)의 잔액은 2,211,394원이며, 위약금은 15,040원이다.
- 3)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19. 10. 30. 기업은행에 합계 196,246,96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위 대위변제에 따른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지출한 비용(대지급금)의 잔액은 1,617,230원이며, 추가보증료는 320,540원이다.

다. 피고 B의 재산처분행위

피고 B은 2018. 12. 28. 아들인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피고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9. 1. 4. 접수 제151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019가합581875호 사건(이하 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위사건의 증거번호로 본다)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2020가합563743호 사건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들의 피고 회사, B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B은 연대하여 ①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240,082,627원(=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237,856,193원 + 위약금 15,040원 + 대지급금 2,211,394원) 및 그중 위 대위변제금 237,856,19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10. 28.부터 2019가합581875호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인2020. 1. 4.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경기신용보증재단에게 198,184,730원(=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196,246,960원 + 추가보증료 320,540원 + 대지급금 1,617,230원) 및 그중 위 대위변제금 196,246,96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10. 30.부터 2020가합563743호 사건소장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9. 11. 2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2019. 9. 16. 피고 회사의 당좌거래가 정지됨으로써 피고 B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권을, 2019. 10. 28. 내지 같은 달 30. 피고 회사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 원리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 B에 대한 사후구상금 채권을 각 취득하였다. 위 사전·사후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고, 위 증여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있어 가까운 장래에 위 사전·사후구상금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당시 피고 B도 채무초과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B과 피고 C는 원고들을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채권을 해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 B의 책임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위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사전·사후구상금 채권이 실제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최소되어야 하며, 수익자인 피고 C는 그 최소에 기한 가액배상 형태의 원상회복으로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는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게는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보전채권 존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참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9. 9. 16. 피고 회사의 당좌거래가 정지됨으로써 피고 B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권을, 2019. 10. 28. 내지 같은 달 30. 기업은 행에 피고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 B에 대한 사후구상금 채권을 각 취득하였고, 이 사건 제1, ② 신용보증약정은

2016. 10. 28. 내지 2017. 9. 20. 체결되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인 2018. 12. 28. 이미 위 사전·사후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 나아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들의 피고 B에 대한 사전·사후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호증, 2020가합563743호 사건의 갑 제9, 10, 13,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D에게, 2018. 9. 17. 액면금 105,000,000원, 지급기일 2019. 1. 10.로 된 전자어음을, 2018. 9. 21. 액면금 49,500,000원, 지급기일 2019. 1. 19.로 된 전자어음을, 2018. 10. 2. 액면금 86,000,000원, 지급기일 2019. 1. 31.로 된 전자어음을, 2018. 11. 19. 액면금 56,000,000원, 지급기일 2019. 3. 9.로 된 전자어음을 각 발행하였으나, 위 각 지급기일까지 위 각 어음금 채무를 상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9. 1. 10. D에게 피고 B 소유인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F호(이하 'E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 피고 회사가 2019. 8. 20.부터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연체한 사실, 피고 회사가 고양시 일산동구 G, 공장동 H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700,000원으로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그 임대인에게 2019년 9월경까지 약 12회 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든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들의 피고 B에 대한 사전·사후구상금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피고 B에 대한 사전·사후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의 대상으로 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은 물론이고 위 증여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8개월이 지난 2019년 8월 중순경까지는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 납부를 연체하지 않고 제때 상환하였다고 보인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증여계약전후로 조세·보험료·직원급여 등을 체납·체불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2019. 9. 16.에야비로소 이 사건 제1, ②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그로부터 다시약 1개월이 지난 2019. 10. 28. 내지 같은 달 30. 원고들이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기업은행에 대위변제를 하였다.

(3) 2018. 12. 31. 당시 피고 회사의 자산총액은 5,784,854,358원, 부채총액은 2,275,232,263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3,509,622,095원 초과하는 상태였고, 피고 회사의 2018년도 당기순이익도 240,119,487원에 달하였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약 1 내지 2개월 전에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1년 더 연장하여 주기까지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신용등급,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그 보증기한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보이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신용 ·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된 상황이었더라면 그 직전에 실시된 위 심사에서 피고 회사의 위보증기한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5)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부터 사업장의 차임을 지급하지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회사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무렵부터 그 재정 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사업장의 차임을 연체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적어도 2019년 8월 중순경까지는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영위하면서 임대인의 묵인 내지 임대인과의 협의 하에 사업장의 차임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대신 임대차 종료 후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차임을 공제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6) 피고 회사가 D에게 어음금 채무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9. 1. 10.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2019. 1. 23. 피고 B을 통해 위 어음금을 상환하였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D 앞으로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어음금 지급연체 상태는 일시적이었다고 보인다.

다. 채무초과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어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경우에도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설정된 물적 담보 등으로 우선변제가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 채무는 소극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5. 선고2007다84055 판결 참조).

한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피고 B의 재산내역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는 피고 B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증여계약에 의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적극재산 : 피고 B 소유의 다음 각 부동산 중 피고 B의 일반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으로 평가되는 부분은 합계 1,045,833,141원(= 55,000,000원 + 900,387,700원 + 38,510,000원 + 51,231,551원 + 703,890원)이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 55,000,000원(= 시가 405,000,000원 -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 350,000,000원)

(가) 이 법원의 1 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405,000,000원이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J(이하 'J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20,000,000원, 채무자 피고회사, 근저당권자 J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350,000,000원이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의 책임재산으로 평가되는 부분은 시가 405,000,000원에서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 3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진 55,000,000원이다.

(2) E 부동산의 가액 : 900,387,700원(= 시가 980,000,000원 -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 79,612,300원)

(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E 부동산의 시가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980,000,000원이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갑 제8호증, 2020가합563743호 사건의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E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미합중국법화금 360,000불, 채무자 피고 회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K(이하 'K은행'이라한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79,612,300원이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E 부동산 중 피고 B의 책임재산으로 평가되는 부분은 시가 980,000,000원에서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 79,612,300원을 제외한 나머진 900,387,700원이다.

(3) 충남 부여군 L 답 1738m³, M 답 3191m²(이하 'N리 부동산'이라 한다)의가액 : 38,510,000원(= 시가 123,510,000원 -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 85,000,000원)

(가)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N리 부동산의 시가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123,510,000원이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갑 제9,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증여계약 당시 N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5,000,000원, 채무자 피고 회사, 근저당권자 기업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85,000,000원이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N리 부동산 중 피고 B의 책임재산으로 평가되는 부분은 시가 123,510,000원에서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 8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38,510,000원이다.

(4) 충남 부여군 O 답 2515.6㎡, P 답 1994.6㎡(이하 'Q리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 : 51,231,551원(= 시가 86,000,000원 -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 34,768,449원)

(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Q리 제1 부동산의 시가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86,000,000원이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갑 제10호증, 2020가합563743호 사건의 갑 제24,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Q리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5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R(이하 'R은행'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34,768,449원이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Q리 제1 부동산 중 피고 B의 책임재산으로 평가되는 부분은 시가 86,000,000원에서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 34,768,449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51,231,551원이다.

(5) 충남 부여군 S 임야 869㎡ 1/3지분(이하 'Q리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 : 703,890원

(가)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Q리 제2 부동산의 시가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703,890원(= 개별공시지가 1㎡당 2,430원 × 869㎡ × 1/3)이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Q리 제2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등 물상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Q리 제2 부동산은 그 가액 703,890원 전부가 피고 B의 책임재산으로 평가된다.

나) 소극재산 : 피고 B이 부담하는 다음 각 채무의 합계 545,435,999원(=241,333,333원 + 124,500,000원 + 150,000,000원 + 29,602,666원)에 더하여, 위 2항에서 본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240,082,627원의 구상금 채무 및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198,184,730원의 구상금 채무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피고 B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소극재산 가액의 합계는 983,703,356원으로서 앞서 본 적극재산 가액의 합계 1,045,833,141원보다 62,129,785원 적다.

(1) 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 241,333,333원

(가) 갑 제16호증, 2020가합563743호 사건의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B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 채무를 부담하던 사실, 위 보증 채무가 2018. 10. 11. 기준으로는 343,000,000원, 2019. 9. 27. 기준으로는 243,000,000원이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 B 소유의 N리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8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사실, 그 당시 위 담보부동산의 가액은 123,510,000원이고 위 담보부동산에 위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던 사실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보증 채무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인 2018. 12. 28. 기준으로 326,333,333원1)[= 2018. 10. 11. 기준의 보증 채무 343,000,000원 - {(위 343,000,000원 - 2019. 9. 27. 기준의 보증 채무 243,000,000원) × 2개월/12개월}]이던 것으로 추정되고, 그중 85,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B 소유의 N리 부동산에 설정된 물적 담보로 우선변제가 확보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 보증 채무 중 피고 B의 소극재산으로 평가되는 부분은 위 326,333,333원에서 위 8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241,333,333원을 넘지 않는다고 보인다.

(2) 주식회사 T(이하 'T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 : 124,500,000원

(가) 갑 제16호증, 2020가합563743호 사건의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B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T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 채무를 부담하던 사실, 위 보증 채무가 2018. 10. 11. 기준으로는 76,000,000원, 2019. 9. 27. 기준으로는 68,500,000원이던 사실, 피고 B의 T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2018. 10. 11. 기준으로는 50,000,000원, 2019. 9. 27. 기준으로는 48,500,000원이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의 T은행에 대한 채무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인 2018. 12. 28.

기준으로 124,500,000원[= 2018. 10. 11. 기준의 채무 합계126,000,000원 - {(위 126,000,000원 - 2019. 9. 27. 기준의 채무 합계 117,000,000원) × 2개월/12개월}]이던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위 채무에 대하여 우선변제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이상, 위 124,500,000원 전부가 피고 B의 소극재산으로 평가된다.

(3) K은행에 대한 채무 : 0원

(가) 갑 제16호증, 2020가합563743호 사건의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B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K은행에 대한 79,612,300원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 채무를 부담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피고 B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위 79,612,300원의 대출금채무 외에 피고 회사의 K은행에 대한 67,080,000원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도 보증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가 주장하는 위 67,080,000원의 대출금 보증 채무가 위 증여계약 당시 이미 발생하였다거나, 가까운 장래에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K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 B 소유의 E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미합중국법화금 360,000불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사실, 그 당시 위 담보부동산의 가액은 980,000,000원이고 위 담보부동산에 위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던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의 K은행에 대한 대출금 보증 채무 79,612,300원 전액에 대하여 피고 B 소유의 E 부동산에 설정된 물적 담보로 우선변제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이는 피고 B의 소극재산에서 제외된다.

(4) J은행에 대한 채무 : 0원

(가) 갑 제16호증, 2020가합563743호 사건의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B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J은행에 대한 35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 채무를 부담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J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사실, 그 당시 위 담보부동산의 가액은 405,000,000원이고 위 담보부동산에 위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던 사실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의 J은행에 대한 대출금 보증 채무 350,000,000원 전액에 대하여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물적 담보로 우선변제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이는 피고 B의 소극재산에서 제외된다.

(5) R은행에 대한 채무 : 0원

(가) 피고 B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R은행에 대하여 34,768,449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원고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B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R은행에 대한 447,290,516원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가 주장하는 위 447,290,516원의 대출금 보증 채무가 위 증여계약 당시 이미 발생하였다거나, 가까운 장래에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B의 R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 B 소유의 Q리 제1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5,5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사실, 그 당시 위 담보부동산의 가액은 86,000,000원이고 위 담보부동산에 위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던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의 R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34,768,449원 전액에 대하여 피고 B 소유의 Q리 제1 부동산에 설정된 물적 담보로 우선변제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이는 피고 B의 소극재산에서 제외된다.

(6)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채무 : 150,000,000원

갑 제16호증, 2020가합563743호 사건의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B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15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 채무를 부담하던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달리 위 보증 채무에 대하여 우선변제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이상, 위 150,000,000원 전부가 피고 B의 소극재산으로 평가된다.

(7)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 : 29,602,666원

(가) 갑 제16호증, 2020가합563743호 사건의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B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U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 채무를 부담하던 사실, 위 보증 채무가 2018. 10. 11. 기준으로는 35,419,000원, 2019. 9. 27. 기준으로는 521,000원이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의 U에 대한 대출금 보증 채무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인 2018. 12. 28. 기준으로 29,602,666원[= 2018. 10. 11. 기준의 보증 채무 35,419,000원 - {(위 35,419,000원 - 2019. 9. 27. 기준의 보증 채무 521,000원) × 2개월/12개월}]이던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위 보증 채무에 대하여 우선변제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이상, 위 29,602,666원 전부가 피고 B의 소극재산으로 평가된다.

(8) D에 대한 채무 : 0원

(가)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피고 B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D에 대하여 합계 296,5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회사가 D에게, 2018. 9. 17.부터 같은 해 11. 19.까지의 기간 중액면금 합계 296,500,000원의 전자어음 4건을 발행하였으나, 그 지급기일까지 위 어음금 채무를 상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9. 1. 10. 피고 B 소유인 E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그러나 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증여계약당시 피고 회사의 D에 대한 위 어음금 채무를 인수 내지 보증하였다거나, 피고 B이 그당시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위 채무의 인수 내지 보증을 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성인, 판사 오승이, 판사 송승훈

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